

[제194회-교육사회위 제1차부록]

의안번호	제468호
의 결 년 월 일	2001. . . (제194회)

[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]

제출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년월일	2001. 11. .

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6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11.
제출자 : 충청북도교육감
관련부서 : 총무과

□ 개정이유

-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출산휴가를 연장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임신중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를 "60일"에서 "90일"로 연장(안 제22조제2항).

□ 개정근거

- 근로기준법 제72조(법률 제14876호 2001. 8.14).
-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기간 연장[교육인적자원부 지교12100-681(2001. 9.27)].

□ 개정조례안 : 붙 임

□ 참고사항

- 신구조문대조표
- 관계 법령 발췌서

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2항중 “60일”을 “90일”로 한다.

부 칙

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2조제2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.

②(출산휴가 확대 적용) 제22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 대조표

관 계 법령 발췌 서

근로기준법(법률 제14876호 2001. 8. 14.)

제72조(임산부의 보호) ①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.